

윤리강령지침

제 1 조 주주 및 투자자에 대한 자세

제1장(주주의 권익 보호)

- ① 회사는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주의 정당한 요구와 제안을 존중합니다.
- ② 회사는 경영정보를 성실히 공개하여 주주 및 투자자와 상호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주주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합니다.

제2장(평등한 대우)

- ① 회사는 소액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를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우합니다.
- ② 회사는 항상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여 경영 의사를 결정함으로써 소액 주주의 이익이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합니다.

제3장(적극적 정보제공)

- ① 회사는 회계자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기록, 관리하여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투명하게 제공합니다.
- ② 회사는 정확한 경영정보를 관련 법규에 따라 적시에 제공하여 투자자 등 정보이용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.

제 2 조 고객에 대한 자세

제4장(고객 존중)

- ① 회사는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, 고객이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만족 실현을 위해 노력합니다.
- ② 회사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.

제5장(고객 보호)

- ① 회사는 고객의 이익과 안전,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고객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.
- ② 회사는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존중하고 준수합니다.

제 3 조 경쟁사와 협력회사에 대한 자세

제6장(경쟁사와 공정한 경쟁)

- ① 회사는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, 경쟁사와 정당하게 경쟁합니다.
- ② 회사는 공정거래 질서를 존중하고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합니다.

제7장(협력회사와 공정한 거래)

- ① 회사는 협력회사와 공정한 거래를 통해 상호신뢰와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공동의 발전을 추구합니다.
- ② 회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어떠한 형태의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.

제 4 조 임직원에 대한 책임

제8장(공정한 대우)

- ① 회사는 임직원에 대하여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지 않고 능력과 자질에 따라 공정한 기회를 부여합니다.
- ② 회사는 임직원의 자질이나 능력, 업적 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세워서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합니다.

제9장(근무환경 조성)

- ① 회사는 임직원의 건강과 안전한 업무환경을 위해 노력합니다.
- ② 회사는 임직원 개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함으로써 인재육성과 함께 자아실현을 지원합니다.
- ③ 회사는 임직원의 독립적 인격과 기본권을 존중하며 자유로운 제안과 건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.

제 5 조 준법과 사회적 책임

제10장(국내외 법규의 준수)

- ① 회사는 국가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각종 법규를 준수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제반 법규를 준수합니다.

제11장(국가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기여)

- ② 회사는 생산성의 향상, 고용의 창출 및 조세의 성실한 납부, 사회공헌 등을 통하여 국가경제와 사회발전에 기여합니다.

제12장(환경보호)

- ③ 회사는 자연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의 보전을 위해 노력합니다.

제 6 조 임직원의 기본윤리

제13장(건전한 기업문화 정착)

- ①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이념을 공유하여 회사업무 방침에 따라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을 성실히 수행합니다.
- ② 임직원은 회사 내의 상하 및 동료간의 원활한 의사소통,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조직문화를 창출해 나갑니다.
- ③ 임직원은 주어진 직무에 최선을 다해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고 업무와 관련된 제반 법규와 회사 규정을 준수합니다.

제14장(이해상충 행위 금지)

- ① 임직원은 회사와 이해가 상충되는 어떠한 행위나 관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회사와 개인 또는 부서간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.

제15장(내부정보 이용금지)

- ① 임직원은 업무상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거래하지 않습니다.
- ② 임직원은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 주요정보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제 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.

제16장(회사재산 및 중요정보 보호)

- ① 임직원은 회사의 물적 재산, 지적재산권,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여야 하며, 사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않습니다.
- ② 임직원은 지위를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, 회사에서 얻은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.
- ③ 임직원은 회사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습니다.

제17장(성희롱 방지)

- ① 임직원은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육체적, 언어적, 시각적 언어나 행동을 포함하여 건전한 동료관계를 해치는 일체의 언어나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.

제18장(정치관여 금지)

- ① 임직원은 사내에서 근무시간 중에는 정치활동을 하지 않으며 회사의 조직, 인력 및 재산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.
- ② 임직원 개개인의 참정권과 정치적 견해는 존중되나 각자의 정치적 견해나 정치관여가 회사의 입장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.

제19장(금품 및 향응수수 금지)

- ① 임직원은 거래처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이나 선물 및 향응을 제공받지 않습니다.
- ② 임직원은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 등 이해관계자에게 금품 또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선물 및 향응을 제공하지 않습니다.
- ③ 임직원은 상호간에도 금품 또는 과도한 선물 및 향응을 수수하지 않습니다.

제20장(윤리강령의 준수)

- ① 모든 임직원은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,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.
- ② 임직원은 윤리강령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 받거나 부당한 행위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윤리 경영실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
- ③ 임직원은 윤리강령 위반행위 발생시 철저한 원인 규명과 교육을 통해 재발을 방지합니다.

부 칙

제 1 조 [시행일]

이 지침은 2019년 7월 1일부터 제정 시행합니다.